

18. 農地法施行規則(訂正)

農林水産部 第1217號 1996. 1. 26

관보 제13201호 (그2)(1995. 12. 29)에 게재된 농림수산부령 제1,217호(농지법시행규칙)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관 련 조 문	오 류 사 항	정 정 사 항
제34조 제2항 제4호	4. 영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 서(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 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)	4.(변경협의요청의)
별지 제24호서식(앞 쪽) ⑤농지전용신고 근거란	<input type="checkbox"/> 농지법시행령 제60조	<input type="checkbox"/>제61조
별지 제31호서식(앞 쪽) 구비서류 제4호	4. 영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 서(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 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)	4.(변경협의요청의)
별지 제53호 서식	시장·군수·읍장·면장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...·구청장·.....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